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1. 19. ~ 1. 28.(10일간)

<2026. 1. 26.(월) 10:00 조례특위 제1차 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정일곤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페이지
1	9-729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1
2	9-747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4
3	9-748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6
4	9-749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9-750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10
6	9-751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11
7	9-73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조미선 의원	12
8	9-752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7
9	9-753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18
10	9-757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20
11	9-755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획예산과)	21
12	9-756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3	9-739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가족보육과)	25
14	9-72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오산시장 (도시정책과)	28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29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14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기준을 완화하고 변속차로 기준을 단일화하여 도로규모와 이용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연결 허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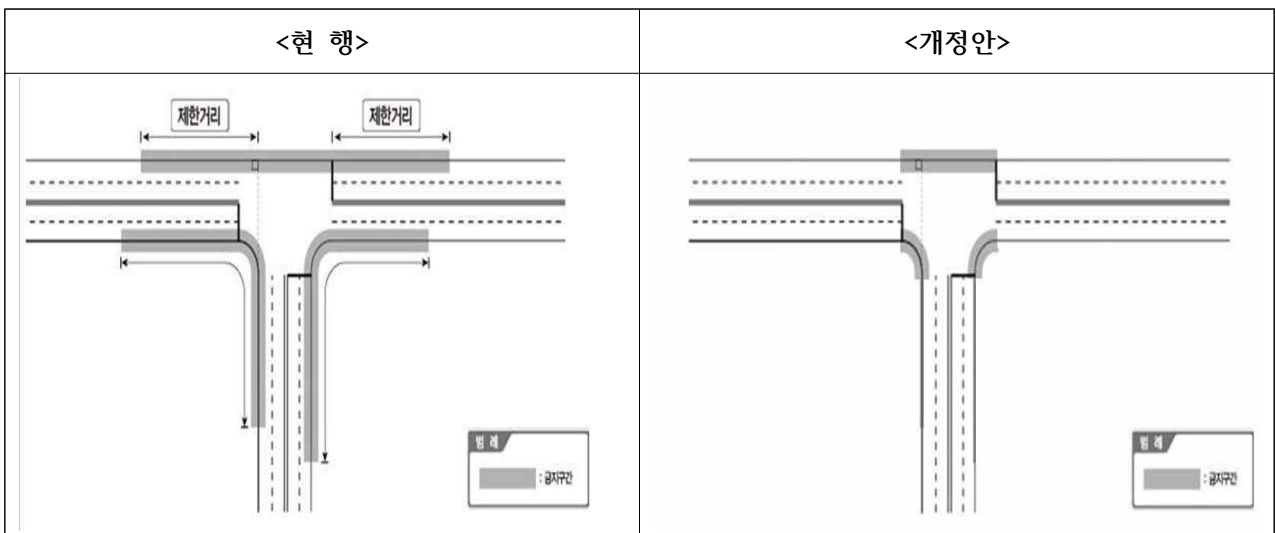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완화(별표 4)
-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 단일화(별표 5)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 완화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를 통해 규제 부담을 없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도로법」은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연결되는 시설별*로 진·출입로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단 진입로, 휴게소·주유소, 농로, 판매시설, 공장·숙박시설, 주택진입로 등

-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방해 방지 등을 위해 변속차로 설치 유무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 한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예시도는 아래와 같음.



- **(별표 5)**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시설에 따라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함.

** 지방도에 자동차를 가속 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감속 차로

- 현행 조례는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14. 12. 29. 일부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지역과 구분하여 규정하기 시작함.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제정·개정이유 참조)

- 개정안에서는 ‘그 밖의 지역’의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자 구분을 없애고, 추가적으로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하여 주차 대수 ‘10대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분화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계에서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으며,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지난 2023년 11월 변속차로 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음. ([보도자료-중기음부즈만] 변속차로 기준 완화 건의_231127 참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및 변속차로 기준이 상당히 완화됨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성길용 의원

찬성의원 : 전도현,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학길 동행도우미 사업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학길 동행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도우미 지원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 업무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학길 동행도우미’는 통학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집에서 학교까지 정해진 통학로를 동행하며 교통사고 위험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부천, 하남, 서울 성동구 등에서 ‘워킹 스쿨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일부 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인력과 최대 규모인 5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시는 자원봉사자로 근무자를 구성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등, 동행도우미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전승완 기자, “성동구,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 실시”, 매일일보, 2024.02.29. 참고)

(추정현 기자, “워킹스쿨버스 확대해야”, 인천일보, 2025.12.09. 참고)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8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조직·직제 개편이나 정원 증원 등이 곧바로 보조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관리 및 통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인건비 목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조직·직제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의 통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직제, 인사, 보수 조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기구 및 정원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은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2 ①) 먼저, 직제 및 인사 등의 조정 시 협의 의무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보조금법」 제14조¹⁾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보조사업자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의 사례를 보면,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자의 직제·인사 운영에 대해 주무부처가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제 등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대한체육회 정관 제59조²⁾ 참조)
- (안 제6조의2 ②) 다음으로,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간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1) 「지방보조금법」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체육회 정관 제59조(규정 제·개정 등) ① 체육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중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시·도체육회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가입·탈퇴규정’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제·개정할 때 국가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정관 시행 및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13.>

③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내규(또는 시행세칙)로 정한다.

④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내규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는 것이 일반원칙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보조사업의 내용, 규모 및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는 해당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조례안의 의회 제출 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전적·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협의 결과를 제출받는 수준의 소극적·사후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법령 체계 및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49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강좌 특성에 따른 수강료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강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문화원 문화강좌 수강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0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송진영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으로 온라인상 시민의 인권 침해와 2차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및 신고체계 마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위법인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과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송진영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조미선,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영양·식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3)에서 위임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30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14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의원

□ 제안이유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관련 규정 및 별표 18 삭제 (안 제51조제2항 및 별표 18)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용도용적제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방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임.
-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도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시설(학교, 문화시설 등) 부족 문제와 일조권 및 기존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오산시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2003년 9월에 처음 신설되었음.

○ 도입 초기에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면서 상가공실과 상권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주택 공급환경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용도용적제는 고밀 개발을 막아 도시 효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음.

○ 같은 이유로 (사)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불합리한 임의규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용도용적제를 불합리한 임의규제로 제시하면서, 도시의 경제상황과 상업지역의 여건에 따라 용도용적제의 일률적 적용이 지역의 침체나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실발생을 감수하면서 비주거를 개발하기에는 개발·분양시장의 수요확보가 어려운 저성장 시대임을 감안할 때 용도용적제의 일괄 적용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음.
(참고)

○ 전술한 바와 같이,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 도시 기능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도심 공동화 심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며,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

구분	임의규제 검토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국토계획법의 지자체에 위임된 범위에 추가하여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을 규정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하여 도심, 중심지 내 주거 입지를 규제 ○ 해당 지자체 : 서울시, 경기도 등 다수의 지자체 																																				
근거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4대문안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4대문안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4대문안 : 500퍼센트) ③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p><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p> <p>2. 제1호 이외 4대문안의 용적률</p> <table border="1" data-bbox="351 1456 1292 1926"> <thead> <tr> <th>주택연면적비율(%)</th> <th>중심상업지역</th> <th>일반상업지역</th> <th>근린상업지역</th> </tr> </thead> <tbody> <tr> <td>80 이상 ~ 90 미만</td> <td>600% 이하</td> <td>480% 이하</td> <td>420% 이하</td> </tr> <tr> <td>70 이상 ~ 80 미만</td> <td>650% 이하</td> <td>510% 이하</td> <td>450% 이하</td> </tr> <tr> <td>60 이상 ~ 70 미만</td> <td>700% 이하</td> <td>540% 이하</td> <td>480% 이하</td> </tr> <tr> <td>50 이상 ~ 60 미만</td> <td>750% 이하</td> <td>570% 이하</td> <td>510% 이하</td> </tr> <tr> <td>40 이상 ~ 50 미만</td> <td>800% 이하</td> <td>600% 이하</td> <td>540% 이하</td> </tr> <tr> <td>30 이상 ~ 40 미만</td> <td>800% 이하</td> <td>600% 이하</td> <td>570% 이하</td> </tr> <tr> <td>20 이상 ~ 30 미만</td> <td>800% 이하</td> <td>600% 이하</td> <td>600% 이하</td> </tr> <tr> <td>20 미만</td> <td>800% 이하</td> <td>600% 이하</td> <td>600% 이하</td> </tr> </tbody> </table>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42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650% 이하	510% 이하	45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700% 이하	540% 이하	4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50% 이하	570% 이하	51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4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600% 이하	480% 이하	42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650% 이하	510% 이하	45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700% 이하	540% 이하	4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50% 이하	570% 이하	51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4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5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8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지역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상 ~ 70 미만	720% 이하	600% 이하	4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790% 이하	650% 이하	51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860% 이하	700% 이하	54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930% 이하	750% 이하	5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20 미만	1,000% 이하	800% 이하	600% 이하

용도용적제 예외지역 :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적용

가.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나. 균형발전사업지구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규제검토

○ 상업지역의 특성과 역할

- 상업지역은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업무, 사회, 문화 시설이 집적되거나 중심지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함
- 따라서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교통시설을 적절히 배분하고 도시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 용도용적제의 적용취지와 역할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한은 도시내에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게 용도유치가 필요하나 과도한 주거용도 개발시 상업지역의 고유의 기능이 아닌 고밀의 주거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됨
- 따라서, 용도용적제 적용에 따라 상업지역의 과도한 고밀주거개발을 억제하고 상업지역의 용도순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음

○ 용도용적제의 적용의 문제점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시개발에서 저성장시대로 전환에 따라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상업지역의 개발도 과거 개발시대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상업지역중 역세권일대, 지역생활 중심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상업, 업무 시설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주거복합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화의 우려도 있음
- 도시의 경제상황과 상업지역의 여건에 따라 용도용적제의 일률적 적용이 지역의 침체나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해외 도심주거정책도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영국의 경우 상업지역에 저렴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을 공급을 의무화 하거나, 일본의 경우에는 도심내 주거도입시 오히려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업지역의 도시관리정책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복합개발이 일반화 되어 있고, 주거복합개발시 주야간 활력유지가 가능하여 활력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도 업무, 판매위주의 비주거용도 개발이 상업지역 지정의 취지인 도시발전의 견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음 - 공실발생을 감수하면서 비주거를 개발하기에는 개발·분양시장의 수요확보가 어려운 저성장 시대임을 감안할 때 용도용적제의 일괄적용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p>임의규제 유형구분</p>	<p>1. 재량권 남용</p>
<p>개선방안</p>	<p>[규제의 타당성 추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개발, 주거지와 경제기반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유도, 활성화 측면에서 용도용적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지역 특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연구기관 등의 학술적 추가 검토 후 개선방안 결정 필요

오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2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조미선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의원

□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3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전예슬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의원

□ 제안이유

-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을 의원 발의 의안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8조제1항)
- 의원 발의 의안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사 시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현행 시장에서 시의원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78조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비용추계서 제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당초 비용추계서 제출의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으로 규정되어 발의되었던 것이(2010년 8월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원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작성에 난점이 있고,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의원의 제출 의무가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토록 규정한 현 규정이 적절하다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현재 시장 제출 조례안에 국한된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의원 발의 조례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복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57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1월 8일

발의의원 : 이상복 의원

찬성의원 : 성길용, 전도현, 조미선 의원

□ 제안이유

- 조례 입안·검토 및 정책자료 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사무과장 하부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두도록 규정함
(안 제1조의2)

□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조례 입안·검토 및 정책자료 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5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관내 인구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결혼 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결혼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혼남녀의 결혼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중 성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서울, 경기도를 포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 등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대체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결혼장려금’, ‘결혼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결혼지원금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혼인 건수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속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거나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음.
- 본 조례안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원 대상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효과성, 유사한 결혼 장려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진주시(100만원 이내의 축하상품권), 사천시(100만원 추가 지원), 부산 사하구(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 등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아울러,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및 2025년 성혼자에 대해서도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목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③ (혼인) '25.8.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
-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지원인원

- 1차 : 2,650쌍
- 2차 : 1,540쌍

□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56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책임 강화와 감사·예산·조례 등 고난도 의정 수요 증가로 인한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증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개정 : 904명 → 905명 <증1> (안 제21조)
 - 집행기관의 정원 : 88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22명 <증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및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의견없음.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3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1월 9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입양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안 제3조제1항)
 - 첫째 아이 : 100만원
 - 둘째 아이 : 200만원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신청방법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장려금 지원 절차 규정 (안 제6조)
- 장려금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 2026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적용 (부칙 안 제2조 적용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첫째아 및 둘째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산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

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난해 7.6억이던 출산장려금 예산이 '26년 22.8억을 시작으로 '29년에는 26.4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며(참고1)
- 경기도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아의 경우 500만원(양평, 1개), 200만원(안양, 1개), 100만원(고양 외, 16개), 70만원(광명, 1개), 50만원 이하(용인 외, 7개) 으로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시군(16개 시군)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아의 경우는 200만원(고양시 외, 6개)과 100만원(수원시, 7개)을 지원하는 시군이 가장 많음(참고2)

참고 1

연도별 출산장려금 소요 예산액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예산액	765,200	2,280,000	2,394,000	2,513,000	2,638,000

참고 2

경기도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만원)

시군명	지원금액(단위 : 만원)					지원기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수원시	50	100	200	500	1,000 (분할지급)	1회/분할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 추가지급)						
고양시	100	200	300	500 (분할지급)	1000 (분할지급)	1회/분할
용인시	30	50	100	200	300	1회
성남시	30	50	100	200	300	1회
부천시				700 (10회분할)	700 (10회분할)	분할
화성시	100	200	200	300 (2회분할)	300 (2회분할)	1회/분할
안산시	100	300	500	500	500	1회
남양주시	100	100	100	100	100	1회
안양시	200 (2회분할)	400 (2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매년 분할
평택시	50	120	300	500	500	1회
시흥시		50	100	800 (4회분할)	800 (4회분할)	1회/분할
파주시	100 (최초 10, 1년 뒤 90)	200 (최초 30, 1년 뒤 170)	300 (최초 100, 1년 뒤 200)	300 (최초 100, 1년 뒤 200)	300 (최초 100, 1년 뒤 200)	분할
의정부시	100	300	500	500	500	1회
김포시		100	100	100	100	1회
광주시	100	100	100	100	100	1회
광명시	70	70	70	70	70	1회
군포시	100	300	500	700	700	1회
하남시	50	100	200	1,000 (4회 분할)	2,000 (4회 분할)	1회
오산시	20	50	300 (3년 분할)	600 (3년 분할)	600 (3년 분할)	1회/분할
양주시				200 (2회분할)	700 (4회분할)	분할
이천시	100	200	300	500	500	1회
구리시	50	100	200	300	300	1회
안성시		100	100	100	100	1회
포천시	100	300	500 (2회분할)	1,0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1회/분할
의왕시	100	200	300	500	500	1회
양평군	500 (4회분할)	500 (4회분할)	1,000 (4회분할)	2,000 (5회분할)	2,000 (5회분할)	분할
여주시	100	5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회/분할
동두천시	100	150	250	500 (2회분할)	500 (2회분할)	1회/분할
가평군	100	400 (2회분할)	1,000 (5회분할)	2,000 (10회분할)	2,000 (10회분할)	1회/분할
과천시	100	150	300 (2회분할)	500 (4회분할)	500 (4회분할)	1회/분할
연천군	100 (2회분할)	200 (2회분할)	5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1,000 (5회분할)	분할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안 번호	제9-723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11월 17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 추가 신설 및 단서 조문 개정 (안 제17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의 근거법령 수정 (안 제50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 신설 (안 제50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53조4)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